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배키온방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13295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1-10-2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3.04.27

배키온방

정 보 공 개 서

(주)정확한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정확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0길 10, 5층(방이동)

대표전화 : 070-8899-7999

팩스번호 : 02-6954-2710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별첨서류

[별첨1] 별지 제1호 서식 : 가맹금 예치 신청서

[별첨2] 별지 제2호 서식 :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현황

[별첨3] 별지 제3호 서식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별첨4] 가맹본부 재무증명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정확한	배키온방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0길 10, 5층(방이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1-02-26	2021-03-04	심재현	070-8899-7999	02-6954-2710
	법인등록번호	110111-7799418	사업자등록번호	304-86-0212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심재현/ (주)정확한	배키온방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0길 10, 5층(방이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재현	070-8899-7999	02-6954-2710
임원	고준범/ (주)정확한	배키온방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0길 10, 5층(방이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재현	070-8899-7999	02-6954-271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심재현 / (주)세계적인	한국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0길 10, 5층(방이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재현	070-8899-7999	02-6954-2710
	법인등록번호	110111-8015251	사업자등록번호	375-87-0221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고준범/(주) 따뜻한	미뚝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C동 G114-S83호(문정동, 문정역SKV1)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고준범	1511-7280	0504-313-584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심재현/(주) 따뜻한	미뚝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C동 G114-S83호(문정동, 문정역SKV1)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고준범	1511-7280	0504-313-5843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해당 가맹사업’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배키온방	-
상 호	배키온방 OO점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1,523	40,523	-28,999	35,704	-39,003	-38,999
2022년	42,155	35,974	6,180	456,953	35,154	35,179
2023년	9,559	31,368	-21,809	133,203	-28,007	-27,989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심재현	대표이사	2021.03.01~현재	(주)정확한의 대표이사	가맹사업 총괄
		대표이사	2021.09.03.~현재	(주)세계적인의 대표이사	가맹사업 총괄
		사내이사	2023.03.24.~현재	(주)따뜻한의 사내이사	가맹사업 관리
	고준범	사내이사	2022.12.29.~현재	(주)정확한의 사내이사	가맹사업 관리
		대표이사	2023.03.24.~현재	(주)따뜻한의 대표이사	가맹사업 총괄

명칭	권리내용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배키온방 (상표권)	해당 상표를 가맹점 운영권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등록번호: 40-1822387-0000 등록일자: 2022.01.17	출원번호: 40-2020-0173322 출원일자: 2020.09.28	심재현	2032.01.17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계열회사	(주)세계적인/ 심재현	가맹사업경영	2021.05.17.~ 2024.03.18 (정보공개서 자진 취소, 가맹본부 개별사정)	한국계(등록번호: 20213937)라고 하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계열회사	(주)따뜻한/고준범	가맹사업경영	2024.01.11.~ 현재	미뚝(등록번호: 20240068)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8년 11월 02일(1호 송리단길점)

2. 해당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정확한	배키온방	심재현	2021.03.04.~ 2023.02.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희로 11, 5층 CS-515호(동교동, 한국특허정보원빌딩)
(주)정확한	배키온방	심재현	2023.02.24.~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0길 10, 5층(방이동)

3. 해당 가맹사업 업종

영업표지	업종	
배키온방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일식	덮밥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	2	-	10	10	-	8	8	-
서울	1	1	-	3	3	-	3	3	-
부산	-	-	-	1	1	-	1	1	-
대구	-	-	-	1	1	-	1	1	-
인천	-	-	-	-	-	-	-	-	-
광주	-	-	-	1	1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	1	-	2	2	-	2	2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1	1	-	1	1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1	1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	2	-	-	-	2
2022년	2	8	-	-	-	10
2023년	10	-	-	2	-	8

6. 해당 가맹사업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당해 브랜드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계열회사	(주)세계적인/ 심재현	가맹사업 경영	한국계	한식	2/-	3/-	3/-
계열회사	(주)따뜻한 / 고준범	가맹사업 경영	미됨	한식	-/-	-/-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2023]년도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8	658,182	29,351	1,345,174	62,649	211,251	9,550	-
서울	3	-	-	-	-	-	-	5곳 미만
부산	1	-	-	-	-	-	-	5곳 미만
대구	1	-	-	-	-	-	-	5곳 미만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2	-	-	-	-	-	-	5곳 미만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1	-	-	-	-	-	-	5곳 미만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당사의 가맹사업 [배키온방] 관련 2023.12.31.까지의 가맹점 수는 총 8곳입니다. 해당 가맹점 전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을 위한 권정 기준 실제 영업 개월 수 6개월 이상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가맹점별 매출액 자료는 가맹점별 설치된 포스 자료 기준입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서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할 자료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이후 귀하가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8	734(단위: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전 사업년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5,100	5,100	-	
광고	(비공개)	2023.01.01.~ 2023.12.31	5,100	5,100	-	(비공개)
판촉	-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 가맹본부와 예치계약 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SOHO센터	지점 및 인터넷뱅킹	1566-2566(내선 0->4)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가맹본부와 계약한 예치 은행창구에서 예치신청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뱅킹에 의한 예치방법은 가맹금 예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 가맹본부 상호를 찾아 예치금액을 입력하여 예치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예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
보험계약자	(주)정확한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
보험금액	예치금액	-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

※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피해보상보험 증권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직접 가맹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철거/외장공사(파사드 등),테라스, 전기증설, 가스설비, 상하수도유입공사, 화장실, 샷시, 어닝, 음향, cctv, 덕트입상, 냉난방기, 소방시설, 인허가, 식기세척기, 포스, 인테리어소품, 지방경비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인테리어, 주방설비 등 기타 비용	자율선택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22,000	계약체결 후 예치	영업 개시 전	영업 개시 후	1. 가입비 2. 영업 노하우, 가맹점운영권부여 3. 최초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 자료 제공 * 계약 해제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
교육비	7,700	계약체결 후 예치	교육 실시 전	교육 실시 후	-
총계	29,700	-	-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종료일

30일 이내의 미납채무가 있을 경우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과 정산 후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3,000	계약체결 후 예치	가맹계약 미이행, 자재대금, 경영지 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 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잔존채무, 손해배 상액등과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22,000	부가세 포함
교육비	7,700	부가세 포함
보증금	3,000	부가세 없음
합계	32,7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자율선택	49,500	2,475	개별계약	미공사시	66㎡(20평) 기준
주방설비	자율선택	16,500	825	가맹계약시	미공급시	-
주방기기	자율선택	8,800	-			-
의탁자	자율선택	3,850	-			-
초도물품	(비공개) 외 6개 협력 업체	4,400	-		미실행시	-
홍보판촉물	가맹본부	1,650	-			-
온라인마케팅	가맹본부	3,300	-	-	-	-
총계	-	88,000	4,400	-	-	-

※ POS&키오스크는 임대 가능

※ 매장의 크기, 형태에 따라 투자금은 변경될 수 있고 인테리어는 직접 시공 할 수 있으며

직접시공 시 가맹본부의 철저한 감리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비는 3.3㎡(1평)당 금55만원(부가세 포함)이며 감리비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별도항목:

철거/외장공사[간판 및 파사드], 테라스, 전기증설, 가스설비, 상하수도유입공사, 화장실, 샷시, 어닝, 음향, CCTV, 덕트입상, 냉난방기, 소방시설, 인허가, 식기세척기, 포스, 키오스크, 지방경비, 인테리어 소품 등

- 위 표의 금액은 추정한 것으로 지불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지급기간 및 물품대금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총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이율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 가맹희망자의 책임으로 가맹점의 점포입지를 선정한다. -. 가맹본부는 유동인구, 교통량, 입지의 특성, 시장의 특성, 구매습관, 근린시설, 업종별특성 등의 상황에 따른 점포선정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신규교육, 보수교육, 특별교육 등	성년을 원칙으로 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성년을 원칙으로 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매장의 크기에 따라 주방, 설비 집기 비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납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50%(가맹본부):50%(가맹점사업자)	2주일 전	실시 전	실시 후	브랜드이미지, 상품광고
	가맹본부	50%(가맹본부):50%(가맹점사업자)	2주일 전	실시 전	실시 후	가맹점모집+상품광고
	가맹본부	100%(가맹본부):0%(가맹점사업자)	-	-	-	가맹점모집광고 시
관측 분담금	가맹본부	협의	2주일 전	실시 전	실시 후	관측 시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	교육 실시 전	실시 전	실시 후	교육필요시 실시
로열티	가맹본부	총매출의 3.3%	매 익월 10일	-	후불	-
POS&키오스크 사용료	가맹본부	0~55	협의	-	후불	-
지연이자	가맹본부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대금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점포환경개선 비용	자율선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Ⅶ. 가맹본부의 경영및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항목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자율선택	협의	협의	실시 전	실시 후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 없음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가맹사업 [배키온방] 관련 2023.12.31.까지의 가맹점 수는 총 8곳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가맹점에 공급되는 주요 필수 물품을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지 않고 모두 3자 물류 협력사가 공급하기에 차액가맹금 발생 정보는 해당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상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의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업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단 양도 시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는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교육비, 보

증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잔여 계약기간 포함)를 포괄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승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7일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양수도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양도자의 잔여기간 승계가 아닌 갱신권 보장기간인 10년을 보장)을 원할 경우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배키온방”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제품,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필수품목(원·부재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제품,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단위: 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브랜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제품,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제품,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	-	해당 없음	2023년 기준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제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당사가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제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해당 없음	-	2023년 기준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야끼도리동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각 메뉴별로 조합하여 판매 가능함
티마고우나기동			
우나기동			
마리네이드사케동			
호르몬동			
네기도로동			
타레이세세리동			
세세리에베JMT			
미소카라메			
숯불갈비우동			
카키(굴)우동			
호태타카키온우동			
후쿠오카에비스야갈비우동			
후쿠오카갈비우동			
부채살스테키동			
모모니쿠동			
세세리동			
새우텐푸라			
닭껍질튀김			
닭껍질만두			
온센다마고			
아지다마고			
연어사시미			
사이코사와통레몬(무알콜)			
사이코사와통레몬(4도)			
사이코사와통레몬(8도)			
통레몬족			
콜라,사이다			
소주			
아사히생맥주			
하나야구준마이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

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당사 또는 지정업 체에서 공급받은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
다른	체에서 공급받은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가맹점사업자	상품 및 메뉴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당사 또는 지정업체에서 공급받은 모든 상품, 용역('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에 명시된 내역)	가맹본부가 권장한 가격	홈페이지에 공지, 유선, 팩스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배키온방과 동일한 업종(덮밥, 우동, 소바)	배키온방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 직선 반경 (점포 간 이격거리) 500m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지하상가, 대학, 기차역, 전철역, 터미널, 공항, 경기장, 휴게소, 호텔, 종합병원, 시장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 영업지역(특수상권)은 위 설정과는 별도의 영업지역입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비고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서면 통지후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되는 경우		
-------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	-	-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	-------	----	------	----------

온라인	-	-	-	-
홈쇼핑	-	-	-	-
전화권유판매	-	-	-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갱신계약 시 갱신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해당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1) 일반적인 해지사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 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채무가 계약이행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또는 대금지급을 연체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교육규정에 의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감독 및 시정요구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품질기준과 영업관리 기준을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 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자체 조달하여 용도와 사용하거나 이를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물품공급비용 미결제 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타가맹점에 공급 또는 경쟁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했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본계약의 준수사항 위반 시, 특약사항 위반 시
○ 가맹점사업자가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2) 즉시 해지사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건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3) 가맹사업의 통일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경영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4)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제43조 제3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기존 계약 내용대로 계약조건을 유지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관리팀

당사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잔여 계약기간 포함)를 포괄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승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7일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양수도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양도자의 잔여기간 승계가 아닌 갱신권 보장기간인 10년을 보장)을 원할 경우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에게 양도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와 계약한 영업지역 내에서 본 계약과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본부가 승인한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
업무위탁	불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의 영업지역을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당사의 허락 없이 귀하 및 귀하가 제3자로 하여금 [배키온방]과 동일한 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 규정은 계약해지 또는 종료 이후에도 최장 1년간 현 가맹점과 동일한 업종으로의 경업을 금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배키온방과 동일한 업종(덮밥, 우동, 소바)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관리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22:00 (가맹본부와 협의 시 조절 가능함)	월 26일 이상 (가맹본부와 협의 시 조절 가능함)	문의: 관리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5명(20평 기준)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본 계약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브랜드이미지광고, 상품광고	50%	50%	별도 절차 없음	대중매체 광고
	가맹점모집+상품광고	50%	50%		
	가맹점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	-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별도공고)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개별 행사, 광고

※ 2022년 07월 05일부터 개정 시행된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와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 광고 100분의 50 / 판촉행사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야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촉행사의 경우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하는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광고와 판촉행사 등은 당사와 귀하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것입니다.

※ 당사의 광고 관련 비용 부담기준은 전국 광고 기준이며 지역 단위 광고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광고 비용 부담액은 가맹점사업자간 균등비율로 합니다. (지역 광고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관련 정책은 당사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벌,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0조(경업금지 의무) 및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0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 금삼천만원(부가세 없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를 위반할 경우 위반 1일당 금삼십만원(부가세 없음)을 위약벌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제25조(자점매입금지)를 위반할 경우 금일천만원(부가세 없음)을 위약벌로 "가맹

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가맹점사업자가 무단 폐점, 무단 영업표지 변경, 가맹본부로부터 양수도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포를 양도한 경우 금삼천만원(부가세 없음)을 위약벌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 계약이 중도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해지될 경우 다음과 같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해지일	위약금(부가세 없음)
계약체결 후 가맹점 오픈 전	금(1,100)만원
가맹점 오픈 후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잔여 개월 수 X (330)만원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20평 기준, 부가세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30일 내외	p11~p12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방문, 홈페이지	-	
상담	- 전화 상담 - 사업내용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정보공개 사항 검토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계약 14일 전 제공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D-30	
가맹금 예치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D-30~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8~27(1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6(1일)	
점포집기, 주방기기입고	- 점포집기, 주방기기, 초도물품 입고	D-15~10(5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기기, 물품 입고	D-26~6(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4~1(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 내부 자율 분쟁 협의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변호사, 가맹거래사로 구성된 외부 전문 업체 (**가맹분쟁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fcmc.kr>**)의 자문을 통하여 분쟁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 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 부담 제외 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 의 결함으로 인 하여 가맹점의 통업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 을 수반하 지 않는 점 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 을 수반하 는 점포환 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 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 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 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 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가 맹 사 업 거래 의 공 정 화 에 관 한 법 률 제 12 조 의 2 규 정 에 의 해 부 담 제 외 사 유 해당 시	○점포환경개 선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 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자 양상일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 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금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관리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부담 (요청 시 별도 협의)	문의: 관리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부가세포함)	비고
신규 교육	3일	금770만원(1인 기준)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별도계획	별도 책정	신 메뉴 출시 등
특별 교육	별도계획	별도 책정	필요시 실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가맹점 오픈이 지연되거나 가맹점에 근무 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 오픈 1일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02-6956-2899)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08.1.31>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예치가맹금		₩ (금 원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에 점포를 개설하고자하는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제공일 : 20 년 월 일

[별지 제3호 서식]

■ 가맹희망자 보관용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명			
가맹희망자 (※ 모든 빈칸은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주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 제공 받은 시간까지 작성(24시 형태로), 예)오후 2시면 14시로 기재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작성 (가맹본부 사무실, OO가맹점 내, 서울시 강남구 소재 OO커피숍 내, 이메일)		
⑥ 수령확인문구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문서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정히 (수 령 하 였 음)		
	※ “수령하였음” 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주의사항 :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제공하고 ① ~ ⑥의 각 빈칸이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v.2014.02			

■ 가맹본부 보관용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명			
가맹희망자 (※ 모든 빈칸은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주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 제공 받은 시간까지 작성(24시 형태로), 예)오후 2시면 14시로 기재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작성 (가맹본부 사무실, OO가맹점 내, 서울시 강남구 소재 OO커피숍 내, 이메일)		
⑥ 수령확인문구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문서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정히 (수 령 하 였 음)		
	※ “수령하였음” 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주의사항 :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제공하고 ① ~ ⑥의 각 빈칸이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v.2014.02			

[별첨4_1] 가맹본부 재무증명_2021년/2022년/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4_2] 가맹본부 재무증명_2021년/2022년/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4_3] 가맹본부 재무증명_2021년/2022년/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4_4] 가맹본부 재무증명_2021년/2022년/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4_5] 가맹본부 재무증명_2021년/2022년/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4_6] 가맹본부 재무증명_2021년/2022년/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4_7] 가맹본부 재무증명_2021년/2022년/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5]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단위: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